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윤한홍 · 고동진 · 박정하
박형수 · 박상웅 · 최수진
한기호 · 안철수 · 강명구
권성동 · 추경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
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,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
의 부담을 고려하러 횟수·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
협의를 응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·소규모에 해당하며, 가맹본부
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
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
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
요가 있음.

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
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·주제 등
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

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제4항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4항 본문 중 “협의 횡수·주제”를 “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별 협의 횡수·주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14조의2(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 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(이하 “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”라 한 다)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 청한 경우에는 <u>협의 횟수·주 제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 라야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등 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 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 으로 협의하여야 한다. ⑤ · ⑥ (생략)	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14조의2(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계약을 맺은</u> <u>가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</u> <u>본부의 매출액 규모별 협의 횟</u> <u>수·주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